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36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 김선교·김성원·박덕흠

김위상 · 송석준 · 구자근

김예지 • 이철규 • 최수진

최보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 대부분 산불의 원인은 불법 소각이나 성묘객의 실수와 같은 실화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가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까지 방화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 생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국민들 의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비용의 청구)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및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불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49조(산불피해 복구 등) (현행 제49조(산불피해 복구 등) ① (생 과 같음) 략) <삭 제>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 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 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74조의2(비용의 청구)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및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